

「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17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관광경제과장)

- 2009.4.10일 행정구역관할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공예전시체험관 주소를 정정하고, 공예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시·도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고
- 시설의 설치 운영에 고건축(한옥)교육 및 체험시설을 추가 하였으며, 조례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“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”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용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공예관 전시 홍보 및 판매 공예품을 타 시·도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으로 확대하였고
- 공예관 운영에 고건축(한옥) 교육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공예전시 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공예품목 확대는 물론 고건축 교육 및 체험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
- 공예 전시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계관광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